

제284회 임시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374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374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8. 23.
- 회 부 일 : 2021. 8. 26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세법」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 되면서 “주민세 재산분”이 “사업소분”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「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.

3. 주요내용

가.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

기 존				개 정			
세목명	납세의무자	세율	징수방법	세목명	납세의무자	세율	징수방법
균등분 (8월)	개인	1만원 이하	부과고지	개인분(8월)	<좌 등>		
	개인사업자	5만원	부과고지		사업소분 (8월)	사업자 (개인·법인)	기본세율 (5~20만원) + 250원/㎡ (연면적 330㎡초과)
	법인	5~50만원	부과고지	<좌 등>			
재산분 (7월)	사업자	250원/㎡ (연면적 330㎡초과)	신고납부	종업원분	<좌 등>		
종업원분	사업자	월급여액×0.5%	신고납부				

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의안공고 : 2021. 8. .

5. 검토의견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, 「지방세법」의 일부개정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.

참고 1

주민세(사업소분) 개요

□ 주민세 개요

- (과세체계)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

세목 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개인분	주소를 둔 개인	1만원 범위 내
사업소분	사업소를 둔 사업주	(기본세율) 5만원~20만원 + (연면적) 250원/m ²
종업원분	사업소를 둔 사업주	월지급급여액의 0.5%

- (세수 귀속) 특·광역시세 및 시·군세

※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

□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

- (과세대상)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
- (납세의무자) 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(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,800만원 이상),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
- (납세지) 과세기준일(7월 1일)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
- (과세표준·세율)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,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

기본세율			연면적에 대한 세율	
법인	개인	5만원	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	250원/m ² (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/m ²)
	자본·출자금액	세액		
	30억원 이하	5만원	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	-
	30억원 ~ 50억원	10만원		
50억원 초과	20만원			

- (중과세) 오염물질 배출사업소(물환경보전법,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)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/m² 적용
- (징수방법) 과세기준일(7월 1일)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·납부
- (납 기) 매년 8월 1일 ~ 8월 31일